

2019년 개정판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실내·외 보육환경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1 실내·외 보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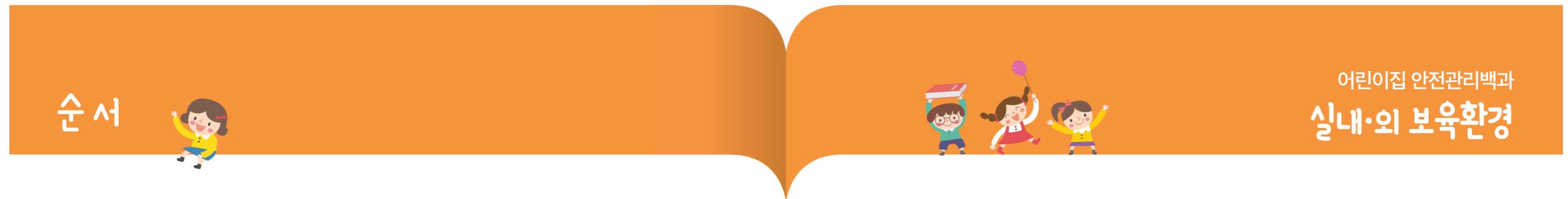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실내·외 보육환경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실내·외 보육환경**





들어가는 말 ..... 4

## 실내 환경



1. 현관문 및 출입구	9
2. 복도 및 계단	18
3. 승강기	22
4. 문 및 창문	26
5. 보육실	30
6. 유희실	46
7. 화장실 및 목욕실	49
8. 조리실 및 식당	54
9. 기타 공간	56
10. 미디어 안전	58

## 실외 환경



1. 건물 주변	62
2. 놀이터	65

## 안전점검 및 수칙



1. 안전점검	80
2. 보육교직원 안전수칙	82
3. 영유아 안전수칙	89

## 참고 자료



[별첨 1] 신체에 해를 끼치는 식물	96
[별첨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대한 내용 및 점검주기	99
[서식 1]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101
[서식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대장	102
[서식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103
[서식 4]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104
[서식 5]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115
[서식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요청서	119
[서식 7]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120
[서식 8] 부모동의 및 조사서	121
[서식 9]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서	123
[찾아보기]	

## 들어가는 말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의 「실내·외 보육환경」은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출입구, 복도와 계단, 유희실, 보육실, 화장실 등 공간별로 관련법과 지침\*, 보육교직원 안전수칙을 수록하였고, 실외 환경은 어린이집 건물 주변의 안전관리와 실외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실내·외 환경 마련을 위해 안전수칙과 점검방법 뿐만 아니라 관련 팁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의 「실내·외 보육환경」에 수록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 법규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고사례와 보육사업안내를 포함한 관련 법규 및 지침(2019. 6 시행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이후 개정된 법규 및 지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내·외 보육환경

실내·외 보육환경의 항목은 실내 환경, 실외 환경, 안전점검 및 수칙으로 구분 되며, 세부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세부항목	내용	근 거
실내 환경	현관문 및 출입구	• 현관문 • 영상정보처리기기 • 출입구	
	복도 및 계단	• 설치 • 이동 공간 확보 • 바닥 및 벽 관리 • 중간문 설치 • 가구 및 물품 관리	
	승강기	• 설치 •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하게 이용하기	
	문 및 창문	• 문 • 창문	
	보육실	• 위치 및 활동 공간 배치 • 놀잇감 관리 • 바닥 및 벽 관리 • 비품 관리 • 전선 및 콘센트 관리	• 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유희실	• 충격완화 장치 설치 • 놀이기구	
	화장실 및 목욕실	• 화장실 바닥 • 세면대 • 변기 • 목욕실 • 비품 및 세제 • 라디에이터 및 화기시설	
	조리실 및 식당	• 조리실 및 식당 설치 및 관리 • 비품 관리	
	기타 공간	• 기타 공간 관리	
	미디어 안전	• 미디어 안전 개념 • 미디어 관리 • 미디어 안전 교육 방법 • 기타	
실외 환경	건물 주변	• 담장 및 울타리 • 동물 및 식물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 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놀이터	• 놀이터 설치 • 놀이기구 설치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안전점검 및 수칙	안전점검	• 정기(매일, 매월) 점검 • 수시 점검	
	보육교직원 안전수칙	• 실내·외 이용 • 자유선택놀이 • 놀이기구 이용시 유의 및 지도방법	• 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 안전수칙	• 실내·외 이용 • 자유선택놀이 • 놀이기구 이용	

## 실내환경

어린이집 실내의 환경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 없이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현관문 및 출입구, 복도 및 계단, 승강기, 문 및 창문, 보육실, 유희실, 화장실 및 목욕실, 조리실 및 식당, 기타 공간 그리고 미디어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현관문 및 출입구
2. 복도 및 계단
3. 승강기
4. 문 및 창문
5. 보육실
6. 유희실
7. 화장실 및 목욕실
8. 조리실 및 식당
9. 기타 공간
10. 미디어 안전





01

## 현관문 및 출입구



### 현관문

#### 설치

- 현관문은 너무 무겁거나 두껍지 않도록 설치하여 개폐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여닫이문의 경우 한 방향으로만 열리는 것을 권장한다.
- 현관에는 돌출부, 문턱이 없는 것을 권장한다.
- 유리문의 경우 안전하고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개폐 관리

- 외부로 바로 통하는 현관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한다.
- 현관문 앞에 영유아의 출입을 막는 중간문(중간 분리막)을 설치하여도 현관문은 반드시 잠겨있어야 한다.
- 안전 및 도난 경보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 벨 또는 인터폰 설치

- 현관문 앞에 벨이나 인터폰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설치한다.
- 벨이나 인터폰에 선이 달려있는 경우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인터폰을 설치할 경우 각 실의 인터폰 번호와 안내글(활동시간 공지 등)을 부착한다.



벨 또는 인터폰 설치

### ▶ 안전장치 설치

-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문닫힘방지대를 설치한다.
-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하는 속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 문틀 사이, 문틈 아래에 손가락이나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경우 끼임방지대를 설치한다.
- 문에 모서리가 있을 경우 모서리보호대를 설치한다.



문닫힘방지대 설치



속도조절장치 설치



끼임방지대 설치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 1) 영상정보처리기기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설치

- 2015년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미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CCTV설치 제외

### 3) 설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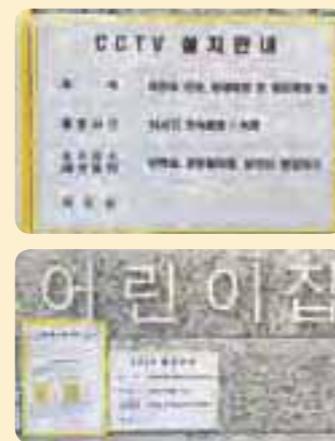
-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 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해서는 안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출입구와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CCTV 설치안내(예시)	
목 적	어린이 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치장소 (촬영범위)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책 임 관	○○어린이집 원장

297mm      210mm×297mm(보증용지(2종) 70g/m<sup>2</sup>)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 4) 운영·관리

- 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자(관리책임관): 어린이집 원장
    - ▶ 열람요청 접수·처리,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자료 유출·오남용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운영담당자: 전담자 지정하여 운영 가능
-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서식 5] 참고, p.115

### - 내부 관리계획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최소 60일 이상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자동 삭제 가능

### -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 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저장장치 보관시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저장장치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할 시 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 영유아의 보호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요청서' 양식을 통해 책임관(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요청서 [서식 6] 참고, p.119
  - 책임관(원장)은 보호자의 서면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 7] 참고, p.120
    - ※ 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않음
  - 책임관(원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책임관(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위 서식과 같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관련 '부모동의 및 조사서'는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시 사전 작성률을 권장한다. ※ 부모동의 및 조사서 [서식 8] 참고, p.121
- 영상정보처리기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회전 및 확대, 혹은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영상정보처리기의 영상자료는 관련법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영상정보의 저장기간은 60일 이상 이어야 하며,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이상 삭제해야 한다. (자동삭제 설정 권장)
- 주의사항
  -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동의를 매년 받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신고서'를 받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 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 휴일 등에도 녹화할 수 있다. (내부관리계획, 안내판 명시)
- 어린이집 원장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외부에서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금지되는 행위이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 특히 어린이집 영상정보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보육교직원 관리감독(노무관리/감시 등)의 용도로 사용 시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영상정보 관리자가 관리차원에서 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 시에도 관리대장에는 기록 관리해야 함
- 영상정보 열람은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열람하는 것은 허용 안 됨(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어린이집은 외부 열람 가능)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
    - 별표1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 보육사업안내: 부록5-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출입구

### ■ 출입 공간 확보

-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는 등·하원이 용이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 공간이 협소한 경우 영유아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시간(등·하원, 견학, 나들이 등)을 파악하고 출입시간을 조절하여 혼잡함을 피하도록 한다.
- 우산꽂이 등은 벽면 가까이에 고정시켜 설치한다.
- 유모차는 출입구 옆쪽 등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주차한 유모차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우산꽂이



유모차 보관

### ■ 미끄럼방지대 설치

- 어린이집으로 진입하는 계단(특히 계단 끝부분)과 출입구의 바닥에는 매트, 발판, 물기제거판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 설치된 미끄럼방지대는 쉽게 밀리지 않아야 한다.



계단 끝부분 미끄럼방지대 설치



출입구 매트 설치

### ■ 수납함(신발장 등) 및 게시판 설치

- 신발장은 가로로 넓고, 낮게 설치한다.
- 신발장이나 수납장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적치하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과 자료물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 게시판에 자료물을 부착할 때 가급적 핀이나 압정은 사용하지 않는다.
- 핀이나 압정을 사용할 경우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신발장 단단하게 고정



안전하게 게시

### ★ 이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 어린이집에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현관문을 습관적으로 잠그지 않는 경우
- 열려 있는 문틈에 영유아가 손을 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경우
- 신발장 위에 무거운 화분을 올려놓았는데 영유아가 손으로 넘어트린 경우
- 신발장이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경우
- 눈·비가 오는 날, 출입구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02

## 복도 및 계단



### 설치

#### 복도

- 복도는 최소한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를 확보한다 (영유아 충돌 방지).



충분한 공간 확보

####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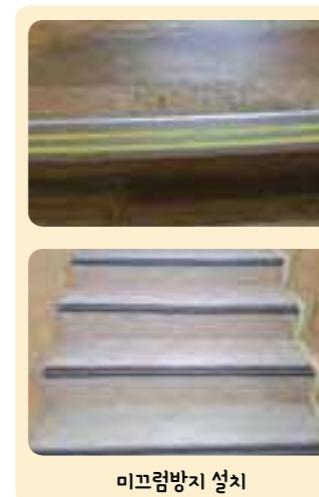
- 계단의 높이, 너비, 경사는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맞게 설치한다.
- 난간은 계단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쪽에만 설치할 경우 오른쪽에 설치하고, 다른 한쪽은 벽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 성인용으로 설치된 계단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크기에 맞는 손잡이형 난간을 설치한다.
- 계단 바닥재는 미끄럼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방지대를 설치한다.



손잡이형 난간 오른쪽에 설치



영유아 신체 크기에 맞는 계단 설치



미끄럼방지 설치

### 이동 공간 확보

- 복도·계단에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한다.
- 복도가 좁거나 꺪여 있는 위치에 어떠한 물품(진열장, 교구장, 개인 사물함 등)도 배치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유리 장식장, 복사기 등), 부피가 큰 비품, 가구, 장난감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

### 바닥 및 벽 관리

- 영유아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을 낮추거나 제거한다.
- 바닥면은 미끄럼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광택제(왁스 등)의 사용을 금한다.
- 나무 바닥의 경우 갈라진 부분이나 틈새, 가시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거친 면이 없어야 한다.
- 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위험요소를 덮개로 덮고 ‘접근불가’ 표시를 통해 영유아의 접근을 막는다.
-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계단의 오르고 내리는 이동방향에 발모양을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벽면에 설치된 영유아용 게시판과 작품은 단단히 부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영유아가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 핀이나 압정은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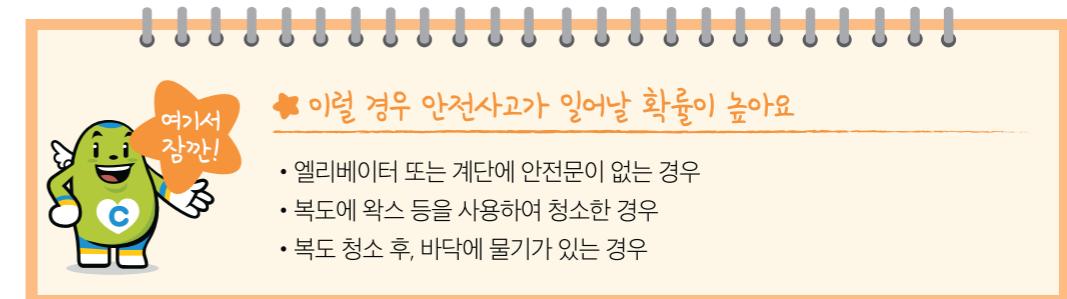
## 중간문 설치

- 계단 안전문은 이동 시를 제외하고 항상 잠겨 있어야 한다.
- 잠겨있는 문은 성인이 쉽게 열수 있어야 한다.
- 부득이하게 영아반이 2층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걸음마기 영아가 기어오르거나 거꾸로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계단의 위·아래에는 안전문을 반드시 설치한다.



## 가구 및 물품 관리

- 복도에 배치된 교구장 선반에는 가벼운 장식물은 둘 수 있으나, 영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인형, 작품 등), 위험하거나 무거운 물건(화분, 액자, 공구함, 약품장 등)은 옮겨두지 않는다.
- 진열장, 교구장은 아래쪽에 무거운 교구 및 물건을 보관하고, 위쪽일수록 가벼운 것을 보관한다.
- 정수기는 온수조절장치 또는 온수보호대 등을 설치하여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 통로에 있는 휴지통에는 위험한 물건을 버리지 않으며, 항상 뚜껑을 닫아(덮어)둔다.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정수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03

## 승강기

### 설치

-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어야 한다.
-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 의무적용

- 실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가 혼자서 탈 수 없도록 안전문을 설치하고, 영유아의 손이 닿는 높이에 버튼이 있을 경우 누를 수 없도록 조치한다(영유아 간힐 우려).



엘리베이터 안전문 설치

###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19.03.28.)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주체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승강기」란 엘리베이터(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포함),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모두 포함한다.

#### ■ 보험가입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승강기 배상책임 공제상품 문의 (Tel 1600-0611)

#### ■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 ■ 안전검사

-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2년 이하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수시검사: 승강기의 변경·교체 등의 경우에 하는 검사
-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거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검사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 사고·고장 보고

-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시 [서식9] p.123 확인 참고하여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통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벌칙), 제82조(과태료)

별칙 및 과태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제32조 제2항 위반)</li> </ul>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제31조 제2항 위반)</li> <li>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제32조 제2항 위반)</li> <li>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제47조 위반)</li> </ul>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제31조 제5항 위반)</li> <li>'시·도지사의 관리주체에 대한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75조 제2항 위반)</li> </ul>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주체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30조 제1항 위반)</li> <li>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제31조 제1항 위반)</li> <li>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제31조 제2항 위반)</li> <li>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제47조 위반)</li> <li>중대한 사고 혹은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제48조 제1항 위반)</li> <li>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제48조 제2항 위반)</li> </ul>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제29조 제5항 위반)</li> <li>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제32조 제2항 위반)</li> <li>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제50조 제4항 위반)</li> </ul>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제29조 제3항 위반)</li> </ul>

**관련 법규·규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제2조) 정의
  - 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 제30조) 보험 가입
  -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제75조) 보고 및 검사
  - 제80조) 벌칙
  - 제81조) 과태료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27조) 보험의 종류 등
  - 제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승강기의 종류 [별표1]
  - 제4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제4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별표 9]
  - 제5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별지 제24호 서식]
  - 제52조)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0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 1]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설치

## 04

## 문 및 창문



## 설치

▶ 문<sup>1)</sup>

- 출입구,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문은 안과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 여닫이문보다 미닫이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한 방향으로 열고 닫도록 한다.
- 가급적 안과 밖이 다 보일 수 있는 강화유리로 된 투명문을 설치하고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부딪침을 방지한다.
- 영유아 신체에 손잡이가 닿을 경우 둑글게 처리된 손잡이를 사용하거나 손잡이 쿠션(커버)을 씌워서 사용한다.
- 문의 잠금장치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한다.
- 문에 커튼을 달지 않는다.
-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문에는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문닫힘방지대를 설치한다. 특히 바람이 센 곳에 위치한 여닫이문은 반드시 설치한다.
-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하는 속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 문틀 사이, 문틈 아래에 손가락이나 발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 경우 끼임방지대를 설치 한다.
- 문에 모서리가 있을 경우 모서리보호대를 설치한다.



## 💡 문을 안전하게 설치하세요



1) 문은 어린이집 외부에서 바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제외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문(보육실문, 화장실문, 중간문 등)을 말함

### 창문

- 2층 이상에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안전장치(안전창살, 이중창 또는 난간 등)를 설치한다.
- 창문은 강화유리 또는 플라스틱 유리(쉽게 깨지지 않는)로 설치한다.
- 창문은 투명하거나 투시가 가능해야 하며, 창문을 식별할 수 있기 위하여 부착하는 스티커 등은 채광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는 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짧게 정리한다.
- 닫혀 있는 창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열려 있는 창문에는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문닫힘방지대를 설치한다.
- 창문틀 사이, 창문틀 아래에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 경우 끼임방지대를 설치한다.
- 창문에 모서리가 있을 경우 모서리보호대를 설치한다.
-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망은 도난과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안전장치로 사용불가



2층 이상 창문 안전장치 설치



방염제품



채광 고려



### 창문을 안전하게 설치하세요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05

보육실



활동 공간 배치

## ▶ 영어 보육실 위치

- 영아반은 1층에 우선 배치한다.
  - 불가피하게 2층에 배치해야 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중간문 설치(p.20 참조)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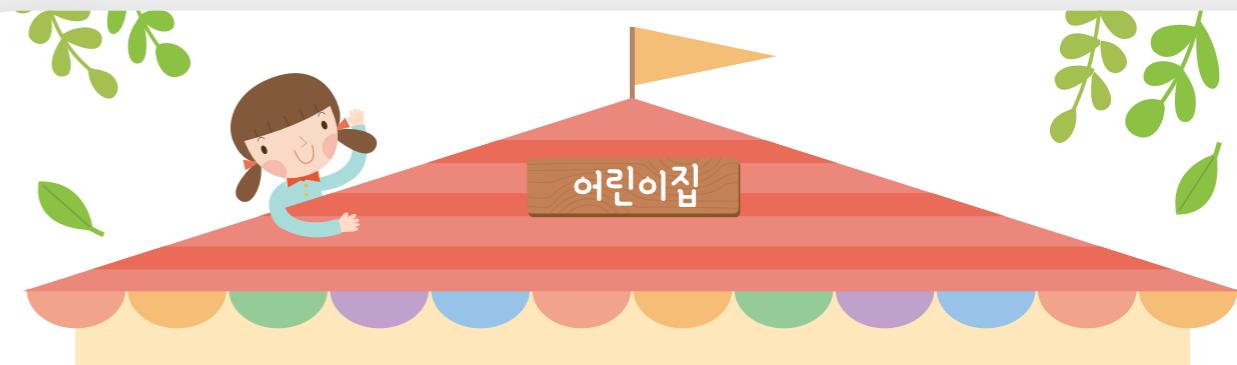
## ▶ 활동 공간 배치

- 보육실 공간을 흥미영역 또는 영유아의 흥미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놀이영역으로 구성한다.  
연령별 흥미영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간
만0세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만1세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역할 및 쌓기놀이영역
만2세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미술영역, 음률영역, 역할 및 쌓기놀이영역
만3~5세	언어영역, 미술영역, 음률영역, 수·조작영역, 과학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

<참고> 2019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 흥미영역은 보육실 내에 배치하여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 흥미영역으로 구성 가능
  - 보육실의 공간이나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경우, 유사한 성격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흥미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한다.
  - 영아반은 영아의 키보다 낮은 교구장을 사용하고 바퀴달린 교구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구장을 벽 쪽으로 배치하여 영아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 유아반은 교구장을 이용하여 영역별 구역을 나누어 각 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이 때 유아의 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한다.
  - 너무 구석지거나 폐쇄된 공간,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다.



어린이집



바퀴 없는 교구장



바퀴 없는 교구장



나으 채사



A photograph of a classroom interior. In the foreground, there are several wooden desks arranged in rows. Behind the desks, there are tall wooden bookshelves filled with books and other classroom materials. The room has a light-colored floor and walls.

교구장을 이용한 영역별 구역



충분한 이동으로 학습

###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 배치 시 고려할 점

영역	내용	지도가 필요한 사항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상은 조용하고 밝은 곳에 배치</li> <li>자료는 편안한 자세로 꺼낼 수 있게 배치</li> <li>보육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휴식 공간과 함께 사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필 등 날카로운 쓰기도구</li> <li>동화책의 종이 (손이 베이지 않도록 유의)</li> <li>카세트 및 CD플레이어 볼륨버튼 조작</li> </ul>
수·조작 및 과학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급적 조용한 곳에 책상과 함께 배치</li> <li>과학영역은 식물이나 곤충을 키울 수 있도록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깨지기 쉽거나 날카로운 탐색물</li> <li>식물, 새싹, 양파, 고구마 등의 삭퇴우기 경우 곰팡이 여부 수시로 확인</li> </ul>
음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적이고 소리가 많음으로 조용한 영역과 떨어진 곳에 배치</li> <li>카펫을 깔아서 소음이 크지 않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본끈</li> <li>깨지기 쉬운 마라카스</li> <li>카세트 및 CD플레이어 볼륨버튼 조작</li> </ul>

영역	내용	지도가 필요한 사항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용하고 밝은 곳, 물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배치</li> <li>영유아들이 손쉽게 자료를 꺼내고 정리할 수 있는 자료장 구비</li> <li>완성된 작품을 말리거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풀뚜껑이 달힌 풀, 스테이플러, 편치, 목공용 본드, 칼날이드러나 있는 테이프커터기 등</li> <li>지점토(유통기한)</li> </ul>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과 움직임이 많으므로 다른 놀이에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고무매트나 카펫을 구비</li> <li>다수의 영유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깨진 놀잇감, 스카프나 넥타이, 가방, 각종 끈 등</li> <li>실물자료 내용물 (화장품 등)</li> </ul>
신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반의 경우 보육실 내 배치</li> <li>탐색과 움직임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끌차 등 바퀴 달린 놀잇감</li> </ul>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실 내에 마련 (예: 수유, 기저귀 갈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액, 뜨거운 물 등</li> </ul>

## 놀잇감 관리

### ■ 안전한 놀잇감 선택

구분	고려사항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건전지를 이용하는 놀잇감은 반드시 확인).</li> <li>무독성 페인트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li> <li>빨거나 만질 때 표면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유해 중금속, 치약 위험).</li> <li>헝겊으로 만든 놀잇감은 불연성이어야 한다.</li> <li>나무로 만든 놀잇감은 쉽게 가시가 일어나거나 마모되지 않아야 한다.</li> <li>화학섬유로 만든 것이나 합성 머리카락이 달린 인형은 좋지 않다.</li> <li>유리나 깨어지기 쉬운 금속의 놀잇감은 사용하지 않는다.</li> </ul>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구성이 강하고, 조립상태가 견고한 놀잇감이어야 한다.</li> <li>만0세~1세 영아에게 제공되는 놀잇감은 직경이 3.5cm 이상이어야 한다.</li> <li>너무 무겁거나 복잡하지 않은 놀잇감이어야 한다.</li> <li>질식, 목졸림 등의 위험이 있거나 뾰족한 모서리, 깨짐, 균열, 헐거운 나사나 볼트, 끝이 깨진 사기그릇, 안전 처리되지 않은 깡통, 화상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총, 화약을 이용한 불꽃놀이 놀잇감, 장시간 현란한 빛을 발생하는 놀잇감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li> </ul>

### ▶ 놀잇감 선택 시 재질 이외에 고려할 사항

-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 색상, 모양 등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 ▶ 놀잇감 세척

구분	세척방법
플라스틱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용 세제를 손수건에 묻혀 표면을 닦고, 젖은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린다.</li> <li>크기가 큰 것은 젖은 수건이나 알코올로 닦을 수 있다.</li> <li>솔을 이용하여 더러운 부분을 유아용 세제로 닦을 수 있다.</li> </ul>
털로 만든 봉제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먼지를 털어주고 물세탁을 한다.</li> <li>세탁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샴푸나 유아용 세제를 푼 다음 가제 수건과 같은 부드러운 천에 묻혀 살살 주무르듯 때를 닦아낸다.</li> <li>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꾹꾹 눌러 물기와 비눗기를 뺀 다음, 물기를 털고 드라이기로 말린다.</li> <li>봉제인형은 물에 담그면 모양이 망가지고 천의 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li> </ul>
타월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탁기에 넣기보다는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 때를 빼는 게 손상을 줄일 수 있다.</li> <li>세탁 후 그늘에서 말린다.</li> </ul>
나무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로 씻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li> <li>항균 코팅된 장난감은 젖은 수건으로 닦고, 다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앤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린다.</li> </ul>
고무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솔을 이용하여 손이 잘 닿지 않는 한쪽이나 틈새 사이에 먼지를 가볍게 털어주고 유아용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li> </ul>
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먼지를 털고 정기적으로 세탁한다.</li> <li>세탁기를 이용할 때에는 올이 나거나 찢어 지지 않도록 세탁망에 넣어준다.</li> <li>손빨래를 할 때에는 유아용 세제를 물에 풀어서 조물조물 문지른 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준다.</li> <li>햇볕에 완전히 말린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전지 등을 사용하는 놀잇감은 녹이 슬거나 칠이 벗겨질 수 있으니 물로 세척하지 않는다.</li> <li>놀잇감에 낀 틈새 먼지들은 칫솔이나 면봉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li> </ul>
세척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잇감은 수시로 세척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시킨다.</li> <li>영아반의 경우 입에 넣고 빼는 놀잇감은 매일 세척한다.</li> </ul>



놀잇감 소독기



놀잇감 세척

### ▶ 놀잇감 보관

- 놀잇감 바구니는 영유아가 교구장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크기와 가볍고 튼튼한 것으로 사용한다.
- 사용하지 않는 놀잇감은 세척 후 유형별로 분류하여 속이 비치는 투명한 박스나 비닐에 넣어 보관한다.
- 공, 물놀이 놀잇감은 그물주머니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 바닥 및 벽 관리

### ▶ 바닥 관리

- 보육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하며,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고무 매트나 카펫을 깔거나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를 부착한다.
- 장판 밑으로 전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여 영유아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 바닥에 다칠 우려가 있는 물건(유리조각, 바늘, 철사, 놀잇감 조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 나무바닥의 경우 갈라졌거나 튀어나온 가시가 없는지 확인한다.
- 바닥을 보수할 때는 영유아들이 등원하지 않는 휴일을 활용하여, 보육 중에는 영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닥 고무 매트



### ▶ 벽 관리

- 벽에 금이 간 곳, 페인트가 벗겨진 곳, 석고가 갈라진 곳,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 벽에 무거운 물건을 걸어놓아서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여름 장마철에 물이 흐르지 않는지 확인한다.
- 오래된 건물의 경우 납이 든 페인트로 칠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하고 무독성 페인트로 칠한다.
- 모빌 등 벽에 부착된 자료물이 영유아가 잡아 당겼을 때 쉽게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요!



#### ▣ 하루 2번 30분씩 환기를 시켜주세요!

- 보육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실내 공기가 순환하여 습기를 자연스럽게 건조시켜 줍니다. 하루 2번,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 환기를 합시다!
- ※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제4권(건강·환경·위생·급식) 참고

#### ▣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세요!

- 곰팡이는 20~30°C의 온도와 60~80%의 습도에서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제습기 등을 이용하여 보육실의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세요!

#### ▣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는?

구분	여름	봄·가을	겨울
적정 온도 (°C)	24 ~ 27	19 ~ 23	18 ~ 21
적정 습도 (%)	60	50	40

**★ 알핀, 압정 대신 집게클립, 파일 바인더로 사용하세요**



여기서  
잠깐!

☒ 게시판에 사용하고 있는 앞핀이나 압정 대신 나무집게나 파일 바인더, 스티커를 사용해보세요!




## 비품 관리

### 보육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품의 종류

- 영유아의 가구(책상, 의자, 교구장, 사물함 등)
- 보육교직원의 가구(수납장, 사물함, 기타 가구 등)
- 전자제품(TV, 컴퓨터, CD 플레이어, 카세트,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전자피아노 등)
- 기타 비품(약품, 피아노, 보행기, 쓰레기통, 청소기 등)

### 영유아 가구(책상, 의자, 교구장, 사물함 등) 관리

- 영유아가 사용하는 가구는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 교구장은 연령별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구장 사용의 예: 만0,1세 1~2단, 만2세 3단 이하, 만3~5세 4단 이하)
- 가구의 모서리는 표면이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 모서리가 직각이거나 뾰족한 경우 모서리보호대를 설치한다.
- 가구의 표면에 가시, 썩은 부분, 튀어나온 금속(못) 등을 없는지 확인한다.
- 교구장 아래쪽에 무거운 교구와 물건을 보관하고, 위쪽일수록 가벼운 것을 보관한다.
- 영아 보육실에 비치된 교구장, 사물함은 바퀴가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영유아 신체에 맞는 의자



모서리 표면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



### ■ 보육교직원의 가구(수납장, 사물함, 기타 가구 등) 관리

- 보육교직원의 개인 물품은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이나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이불장, 가구장이 보육실 내에 있을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개인용품 영유아 손 닿지않게 보관



개인 물품 잠금장치

### 💡 수납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 가전제품(컴퓨터, 카세트, CD 플레이어, TV, 선풍기, 가습기 등) 관리

- 영유아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컴퓨터, 카세트, CD 플레이어 등)은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성인만 조작해야 하는 가전제품(TV, VTR, 가습기 등)은 조작버튼을 가려주거나 안전덮개로 덮어둔다.
- 선풍기나 히터는 보호망을 사용하거나 벽걸이용으로 사용한다.
- 가습기는 무게가 있으므로 교구장이나 단상 위에 올려놓지 않고, 바닥에 놓고 고정시켜 사용한다. 단, 뜨거워지는 가습기는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비치하여 사용한다.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를 꽂아 둔다.
- 모든 전선은 짧게 정리하여 사용하고, 미사용 시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전기주전자는 보육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모서리보호대 설치

### ■ 기타 비품(약품, 피아노, 보행기, 쓰레기통, 청소기 등) 관리

- 약품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도록 교구장이나 수납장 안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 피아노 밑부분, 건반과 뚜껑사이에 푹신한 천이나 부직포를 부착하고, 피아노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 놓고 잠금장치를 한다. 또한 뚜껑이 열리는 피아노 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 보행기를 사용하는 주변에는 부딪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두지 않으며, 바닥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운다. 보행기가 넘어졌을 때, 보행기를 지지하고 있는 X자형의 틀에 손가락이 끼이면 절단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한다. 계단이 있는 층에서 보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실 문을 닫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문을 설치한다.
- 쓰레기통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자주 비워주며, 위험한 물건(목공용 본드, 못 등)을 버리지 않는다.

-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비품(전기주전자, 글루건 등)은 보육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여름철 전자 모기약을かける 경우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영유아용 거울을 부착 할 경우 안전거울이나 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깨짐을 방지한다.



약품 보관



보행기 보관

### ▣ 콘센트

#### 1)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확인

- 콘센트에 전기기구의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 있지 않아 겸게 그을린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2)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사용

-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접지극 없는 콘센트

#### 3) 안전덮개 설치

- 영유아 손이 닿는 위치에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가 있을 경우, 안전용 콘센트 또는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안전덮개

내부 자동 막음장치

#### 4) 전열·전기기구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

- 정격용량을 초과하면 과열되므로 하나의 멀티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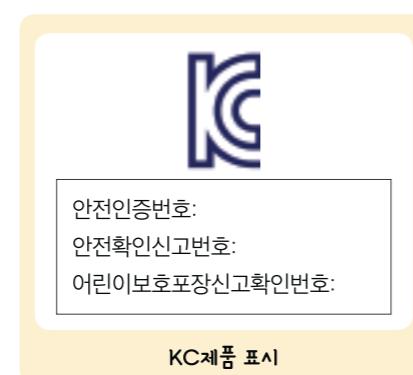
#### 5) 물기(습기) 있는 장소 유의

- 물기 있는 장소(화장실, 주방 등)에는 덮개용 콘센트(방적형) 또는 누전 차단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전선 및 콘센트 관리

### ▣ 인증 제품 사용

- 전기용품 사용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받은 KC제품을 사용한다.



### ▣ 전선 정리

- 영유아 손에 닿는 모든 전선은 길거나 엉키지 않게 하고 짧게 정리한다.
-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 전선 정리용 졸대, 전선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다.



엉키지 않은 전선



졸대 및 전선 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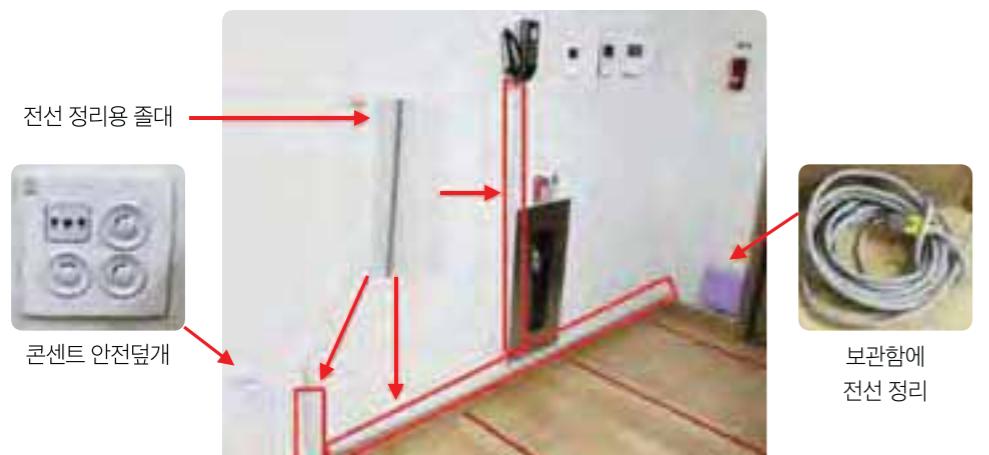
덮개용 콘센트

누전 차단 콘센트

## 6) 전기용품과 벽면 콘센트간의 거리 유지

- 전기용품과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이격거리<sup>2)</sup> 가 좁을 경우 발열·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시킨다.

### 💡 전선 및 콘센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 보육실 안전점검영역 및 안전문제

점검영역	안전문제
바닥 및 벽면	넘어짐, 미끄러짐, 낙상, 유해물질 중독 등
출입문	넘어짐, 부딪침, 협착, 감금, 끼임 등
창문	상해, 추락, 곤충유입, 질식, 도난사고 등
비품 및 보육용품	감금, 낙상, 베임, 찔림, 질식, 상해 등
실내 놀이기구 및 놀잇감	찔림, 베임, 낙상, 눈손상, 질식, 유해물질 중독 등

출처: 성미영, 민미희, 정현심(2018). 아동안전관리(2판). 학지사.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인증의 표시 [별표 9]

★ 이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 바닥장판이 들떠있는 경우
- 환경판에 꽂혀있던 압정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 콘센트를 사용한 후, 습관적으로 안전덮개를 끼우지 않은 경우

2) 이격거리: 송전과 배전 선로에서 두 개의 도체 사이, 한 개의 도체와 지지물 같은 기타 구조재 사이, 도체와 대지 사이의 거리.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띄워 놓는 거리

06

## 유희실



### 충격완화 장치 설치

- 1m 이상 높이의 모든 놀이기구 주변에 있는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충격 흡수용 표면제)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한다.
- 특히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바닥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여 충격을 최소화시킨다.



미끄럼틀 안전매트



벽면 충격완화 장치 설치



### 놀이기구

#### 설치

-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 놀이기구는 영유아의 신장,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한다.
- 놀이기구에는 살이 베이거나 찔릴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모서리 등), 돌출 부분(볼트, 너트 등),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한다.
- 움직임으로 인하여 옷과 끈 등이 놀이기구에 끊이거나 얹매임이 없어야 한다.

**★ 인증된 어린이 놀이기구를 사용합시다**

어린이 놀이기구에는 안전마크(KC)와 「안전인증」문자가 표시됨  
(인증번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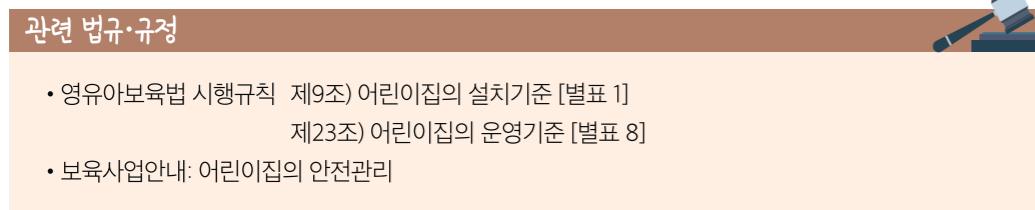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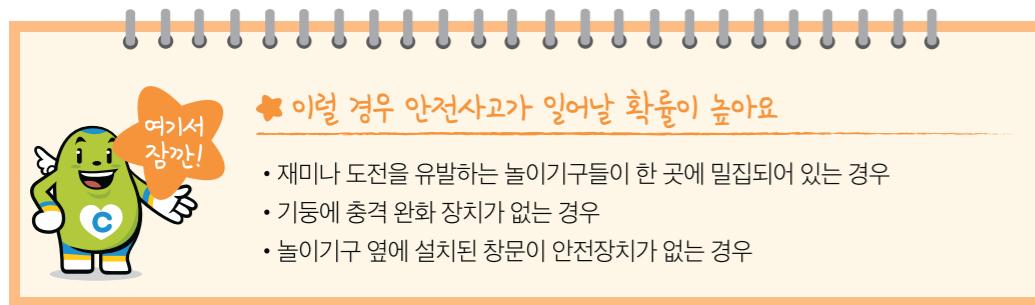
구분	인증표시(어린이놀이기구)
'11. 6. 30까지	
'11. 1부터	

\* 금색 또는 검정색 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부여

#### 배치

- 창문이 없는 벽면에 놀이기구를 배치한다. 창문이 있을 경우 창문에 안전장치(안전창살, 이중창 또는 난간)를 설치한다.
- 영유아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로를 확보하고, 동적 활동(예: 미끄럼틀)의 공간은 서로 거리를 두고 배치한다.
- 고정식 놀이기구(예: 미끄럼틀, 볼풀장 등)의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계시판, 액자 등을 가급적 부착하지 않으며, 부착 후에는 단단히 고정시킨다.

유희실 놀이기구



07

## 화장실 및 목욕실



### 화장실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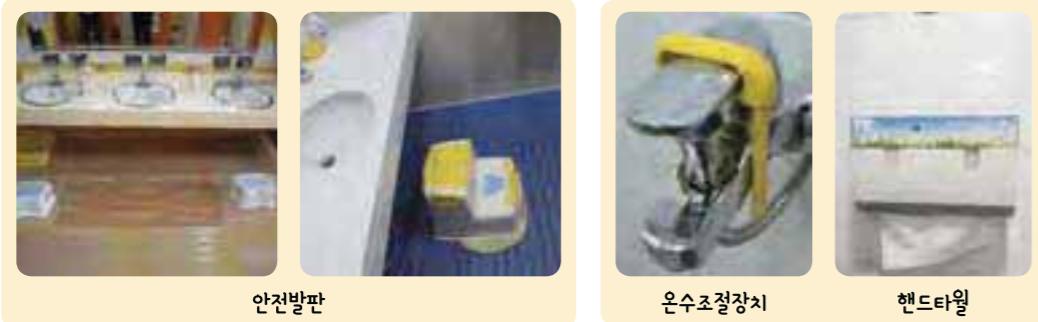
- 화장실 바닥은 하수구를 향해 적정 경사가 이루어져 배수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 바닥재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럼방지대 또는 물기제거판을 설치한다.
- 화장실 바닥은 수시로 체크하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하여 항상 물기가 없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미끄럽지 않은 화장실용 신발을 구비한다.



미끄럼방지 및 물기제거판 설치

### 세면대

-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맞는 세면대를 설치한다. 성인용 세면대를 사용할 경우 영유아 신체 크기에 맞도록 세면대 밑에 계단이나 안전한 빌판 등을 놓아 준다.
- 세면대는 벽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모서리가 뾰족할 경우 모서리보호대를 설치한다.
- 영유아가 수도꼭지를 조작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수온을 조절하고 온수 조절장치 등을 설치한다.
- 수건 또는 휴지걸이, 핸드타월 등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변기

- 영유아용 화장실 문은 영유아가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용변을 볼 때 영유아가 불안해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이 쉽게 감독 할 수 있는 높이로 문을 설치한다.
- 영유아용 변기는 가급적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맞는 변기를 설치한다. 부득이하게 성인용 변기를 사용할 시 영아를 위한 보조대와 안전발판을 설치한다.
- 변기 휴지걸이는 영유아가 앉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모서리가 뾰족한 휴지걸이 등의 경우 모서리보호대를 설치한다.



## 목욕실

-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고, 건물내부에 설치한다.
- 목욕실이 따로 있지 않은 경우 샤워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난방을 해야 한다.
- 샤워기의 위치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한다.
- 영유아가 수도꼭지를 조작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수온을 조절하고 온수 조절장치 등을 설치한다.

### 💡 목욕실을 안전하게 설치하세요



## 비품 및 세제 관리

- 세탁기가 영유아 활동 공간에 있는 경우 뚜껑을 닫고 잠금장치를 한다. 또한 영유아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 위험한 물건(세제, 살충제, 표백제 등)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수납장이나 선반에 보관한다.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세탁기 잠금장치



비품 보관함

### 💡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 고무장갑, 변기청소용 솔, 변기 압축기 등
-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락스 등
- 빗자루, 대걸레 등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 비품 및 세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라디에이터 및 화기시설 관리

- 돌출형 발열기(라디에이터)나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울타리 등)를 설치한다.



보호장치가 있는 라디에이터

### 💡 이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 세면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경우
- 화장실에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대걸레, 고무장갑, 각종 세제가 놓여 있는 경우
- 나무 발판의 끝 부분에 체중이 쓰려 나무 선반이 들리는 경우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08

## 조리실 및 식당



## 설치 및 관리

-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 설치에 설치 허용한다(단, 식당시설 설치 불가).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조리실의 벽, 바닥, 천장은 모두 내화성, 내수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설비한다.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항상 문을 닫아놓거나 중간문을 설치하여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한다.
- 실외로 나가는 조리실 출입구나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청소와 환기를 자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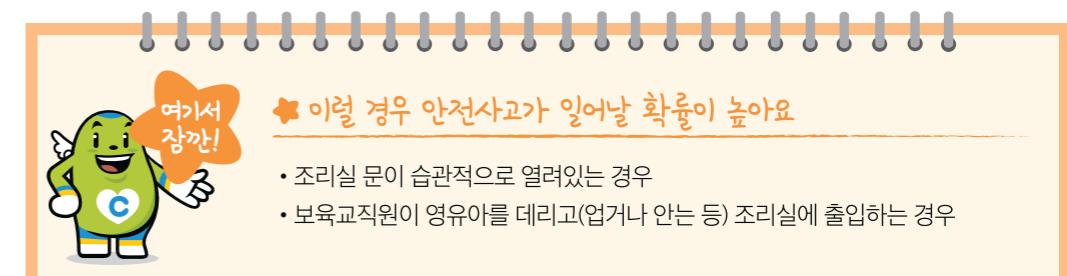


## 비품 관리

- 조리실의 설비(예: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정수기, 조리도구 등)는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조리실 내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누설 경보기 등 소방 설비를 설치한다.

## 조리실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 칼, 가위, 포크 등
-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등
- 사용한 캔, 세제, 철수세미 등
- 기타 가열 중인 조리도구 등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09

## 기타 공간



### 기타 공간 관리

-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교사실, 원장실 등)나 위험 요인이 있는 장소(조리실, 덤웨이터<sup>3)</sup>, 보일러실, 교재교구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 금지사항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물건(살림용)을 쌓아놓는 것은 불가합니다.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 사고 사례와 예방법

##### 신발장 모서리는 무서워요

만3세 남아가 등원 시 다른 유아에 의해 밀려 눈두덩이가 현관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짐

##### \* 예방법

- 모서리가 뾰족하거나 표면이 날카로운 부분에 모서리보호대 설치
- 출입 공간이 협소한 경우 반별로 등·하원 시간을 분산하여 운영
- 출입 공간에서 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영유아 지도

##### 창문 모서리는 위험해요

유희실에서 놀이 하던 만4세반 아이들은 서로 먼저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겠다고 다툼이 생겼고, 한 아이가 다른 유아를 미끄럼틀 옆에 열려있던 창문 모서리로 밀치면서 머리에 상처가 생김

##### \* 예방법

- 유희실에 열려있는 창문이 없도록 확인하고 반드시 잠금장치 설치
- 유희실의 모든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 설치
- 영유아들이 질서 있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지도
- 영유아들끼리 다툼이 생기기 전에 사전 개입을 통하여 더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요

점심식사 후 양치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 세면대로 간 만2세 남아가 세면대 앞에 고여 있는 물을 밟아 미끄러짐

##### \* 예방법

-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하거나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매트, 깔개 사용
- 수시로 화장실 세면대 위에 고여있는 물을 닦아주어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

##### 화장실 물이 뜨거워요

만0세 여아를 세수 시키려는 중 울먹거리며 발버둥 치면서 수도꼭지를 발로 쳤고 뜨거운 물이 순간적으로 아이의 발에 쏟아져 화상을 입음

##### \* 예방법

-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수온을 조절하거나 온수조절장치 등을 설치
- 우는 상태에서 씻기지 않고 울음이 멈춘 뒤 진정된 상태에서 세수시킴

3) 덤웨이터는 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를 말한다.

10

## 미디어안전



### 미디어안전 개념

- 미디어안전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기기<sup>\*</sup>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sup>\*</sup>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 등

- 미디어안전을 통한 미디어기기의 적절한 활용은 영유아에게 시청각을 활용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미디어 관리

- 영유아가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
- 학습과 같은 긍정적인 목적으로 미디어 사용을 격려한다.
- 미디어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영유아에게 미디어 사용의 유해성을 설명하며 상호 소통한다.
- 영유아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나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
- 행동의 보상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미디어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 미디어안전교육 방법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or.kr> ) 공지사항 참고
- 미디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 영유아 발전수준에 적합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영유아가 미디어 사용에 대해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한다.
- 미디어 교육에 대한 내용을 부모와 연계하여 교육한다.

### 기타

- 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스마트쉼센터 콘텐츠·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의존도를 진단할 수 있다.
- 진단결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은 전문상담 및 치료 연계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전화상담(1599-0075), 게시판 상담, 센터 내방상담, 가정방문상담, 집단상담 지원

### 관련 법규·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실외 환경



어린이집의 실외 환경은 보육교직원, 영유아, 학부모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므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건물 주변이 안전한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험 요소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되고 있는지, 동·식물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실외  
환경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건물 주변, 놀이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건물 주변
2. 놀이터



01

## 건물 주변



### 담장 및 울타리 등

#### 설치

- 어린이집이 도로와 접해 있거나 지형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울타리나 담장 등을 설치한다.
- 울타리나 담장 설치 시 영유아들이 울타리·담장을 딛고 올라설 수 없도록 하고, 울타리 아래로 애완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 건물 외부 관리

- 어린이집 외부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LPG 가스통 등은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자물쇠로 잠가 놓는다.



#### 위험요소 제거

- 어린이집의 주변에 있는 맨홀 뚜껑이 잘 덮여 있는지 확인하고, 웅덩이, 요철, 녹슨 부분, 감전 위험물 등을 없앤다.
- 어린이집의 마당이나 구석진 곳에 위험요소(깨진 화분, 적재물, 삽, 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가 없는지 확인한다.
-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한다. 보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 중’으로 표시하여 영유아의 접근을 막는다.

#### 어린이집 실외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
- 웅덩이, 요철, 녹슨 부분, 감전 위험물 등
- 삽, 호미, 괭이, 낫, 원예용 전정가위 등 농기구
- 목재더미, 못 등이 도출된 파손된 가구, 깨진 유리 등

### 동물 및 식물 관리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동물(닭, 오리 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 동물을 둘 경우,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구한다.
- 사육동물은 반드시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
- 배설물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바로 치우고 정기적으로 사육장을 소독한다.
- 신체 자극, 호흡곤란, 중독 등으로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가시가 있는 식물(옻나무, 담쟁이덩굴, 철쭉, 등나무, 장미, 팽자나무 등)은 가능한 키우지 않는다.

※ 신체에 해를 끼치는 식물 [별첨 1] 참고, p.96

- 모든 식물에 대해 유독성 여부를 점검하고, 유독성 식물일 경우 없애거나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심는다.





**★ 이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잠깐!**

- 울타리의 끝이 갈라져 날카로운 경우
- 울타리에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 영유아 접근이 가능한 곳에 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덮개가 없는 경우
- 사용하지 않는 고무호스가 길게 늘어진 경우
- 화단에 성인용 호미, 삽 등 농기구가 놓여 있는 경우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02 놀이터



### 놀이터 설치

#### ■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를 설치한다.  
※ 단,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
- 옥외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놀이터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등으로 설치한다.
- 영유아의 높이에 해당되는 놀이기구의 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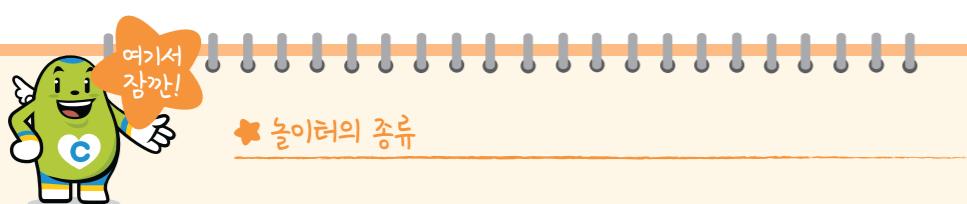
충격완화장치



화면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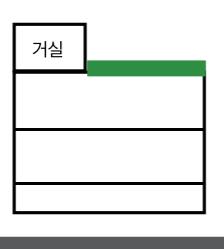


옥외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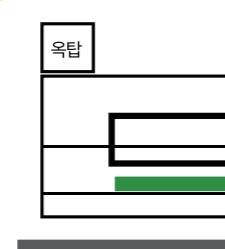


- 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 옥상놀이터: 어린이집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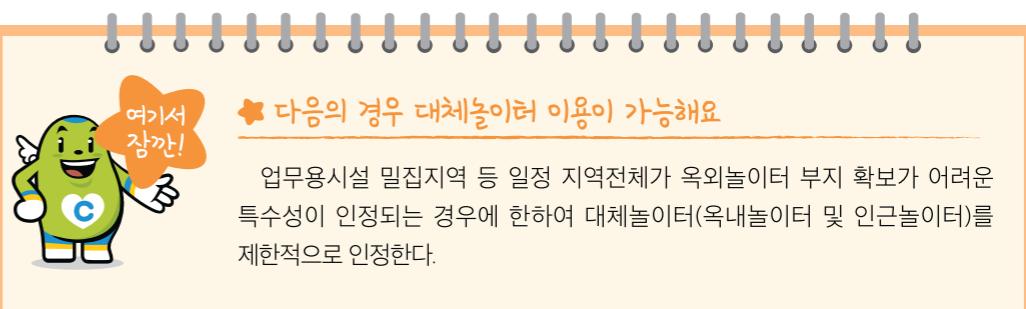
옥내중간놀이터

#### ★ 놀이터 면적 기준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m^2$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고
50인~99인	정원×45%× $3.5m^2$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m^2$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 $3.5m^2$	45명기준
130인~159인	130명×40%× $3.5m^2$	52명기준
160인~199인	160명×40%× $3.5m^2$	64명기준
200인~249인	200명×35%× $3.5m^2$	70명기준
250인~300인	250명×35%× $3.5m^2$	87명기준

- 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놀이터의 면적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한다.



#### ★ 다음의 경우 대체놀이터 이용이 가능해요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 ▣ 옥내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

-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지할 수 없다.
-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한다.  
※ 예: 5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가능. 6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불가
-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
-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가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다.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cm 이내, 계단의 유효 높이는 15cm 이내를 권장

## ▣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고 기타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 인근놀이터

### 1) 인정 기준

- 인근놀이터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로 소유한 놀이터,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한다.
-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않는다.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 내 놀이터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근놀이터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아 동일 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받는다.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사용할 수 없음

## 2) 위치

- 인근놀이터는 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 1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예: 보행거리 → 직선거리, 100m → 200m

## 3) 필요 문서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놀이터의 증빙서류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 설치 시 유의하세요



- 실내놀이터
  -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조명, 채광, 환기, 온·습도가 적정해야 한다.
- 옥내중간놀이터
  -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부식,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mm 이하로 설치한다.
  -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 이상의 강화유리,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와 같이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 ■ 어린이 놀이시설<sup>4)</sup>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
    -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 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전점검 결과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 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 ■ 정기시설 검사

- 신청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 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sup>5)</sup>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42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한국장애인아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한국어린이시설협회	02-493-0978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2-924-2623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031-548-2686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FITI시험연구원	043-711-8868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02-855-6780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1811-9142

- 신청주기: 2년에 1회 이상
- 시점: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 정기시설검사 절차



<참고>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 • 설치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서식 1] 참고, p.101
-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



4)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안전점검<sup>6)</sup>(자체점검)

-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 항목: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대한 내용 및 점검주기 [별첨 2] 참고, p.99
  - 방법: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구분	내용
양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주의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요수리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된 경우
이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는 경우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한다.

#### • 결과 기록·보관

- 결과 기록: 안전점검 실시대장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대장 [서식 2] 참고, p.102
- 결과 보관기간: 3년

### ▣ 안전진단<sup>7)</sup>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영유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신청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6) 안전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는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진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검사기관 현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42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031-548-268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70	한국안전검사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FITI시험연구원	043-711-8868
한국장애인아워크협회	02-6954-4141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02-855-6780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1811-9142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2-924-2623		

※ 안전검사기관 현황과 같음

- 신청시점: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 • 안전진단 절차



<참고>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 • 안전진단 신청 시 구비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서식 3] 참고, p.103
- 어린이 놀이시설 배치도
- 어린이 놀이시설 약도
- 결과통보: 해당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불합격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수리보수
  -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신청
  - 재사용 여부 확인: 안전점검 기관에서 확인

## ▶ 안전교육

-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다.
- 교육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교육주기/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1회당)
- 안전관리지원기관 현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1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785-1280~7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한국생활안전연합	02-3476-01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02-882-0050
대한산업안전협회	02-6275-8653
놀이시설조경자자협회	02-2635-3361
한국재난안전기술원	02-780-4624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02-861-7714
한국안전교육협회	055-352-2276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3440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02-573-3330
한국안전협회	055-266-1191
선진화전략연구소	062-515-2293
국민안전교육진흥회	070-4208-2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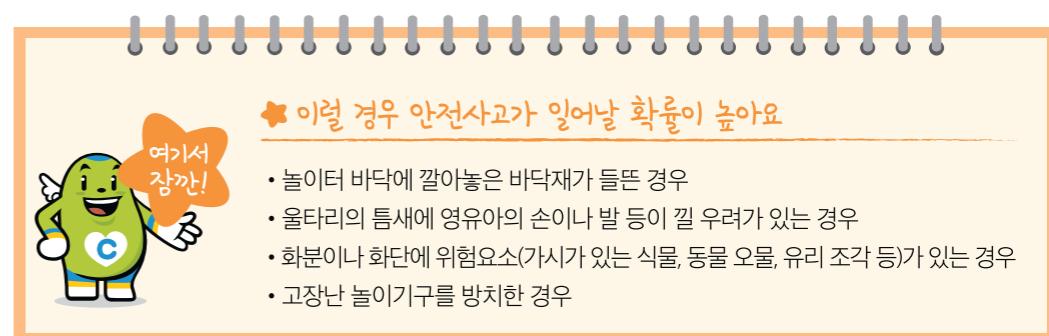
한국장애인인워크협회	02-6954-4141
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국민재난방지협회부산영남지역본부	051-612-666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6-5868
한국시설안전연구원	053-794-0888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031-548-2686
한국안전검사연구원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1599-1972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1811-9142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	053-793-9665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	070-5117-1196
한국레저안전협회	02-836-7330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042-527-1231
예방안전지원센터	02-2265-6660

-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보험 가입

- 설치검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과 담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망 사고의 경우 최고 8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금지 조치 및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를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상품 문의 (Tel 1600-0611)



## 관련 법규·규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12조) 어린이 놀이 시설의 설치검사 등
  - 제15조) 안전점검 실시
  -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 제20조) 안전교육
  - 제21조) 보험가입
  - 제2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8조) 정기시설검사 등
  -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조) 정기시설감사의 신청 서류 등
  - 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 영유아보육법
  - 제15조의 2) 놀이터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보육사업안내: 놀이터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 사고 사례와 예방법

#### 어린이집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요

만4세 △△반은 짹과 함께 손을 잡고 질서를 지키며 산책길을 나섰다. 어린이집 울타리를 나서자마자 땅 위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돌부리에 남아 ○○가 걸려 넘어져 다리에 상처가 생겼다.

##### ※ 예방법

1. 영유아가 스스로 신발을 신은 이후 보육교직원은 신발을 바르게 신었는지 반드시 확인함
2. 실외 놀이 전 사전 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제거함

#### 가시는 무서워요

만2세 여아 ○○이는 어린이집 내 화단에 핀 꽃나무를 만지던 중 손에 가시가 박혔다.

##### ※ 예방법

1. 어린이집 내에 키우는 식물에 대해 유독성 여부를 확인하고, 유독성 식물일 경우 제거
2. 또는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접근 막음

#### 동물을 만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만4세 ○○반 유아들은 고구마를 캐러 어린이집 뒷밭에 갔다. 뒷밭 옆의 개를 본 유아들은 귀엽다며 한꺼번에 달려들어 쓰다듬었고, 예민해진 개가 유아 △△의 손을 물어서 상처가 났다.

##### ※ 예방법

1. 어린이집 내에서 위험한 동물을 키우지 않음
2. 동물을 키울 경우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영유아 손에 닿지 않도록 사육장을 구비함



### ★ 어린이집 실내·외에 금연구역을 표시하세요.

#### 금연구역 표시

##### 금연구역을 표시해야 하는 장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전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부착하는 위치

- 건물 출입구
-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

##### 표시 방법

-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표시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사항 신고 전화번호 표시 가능)



금연 표시

구분	표시 내용		
그림 표시			
문자 표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위반 시 조치사항 내용	예: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내용
10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법 제9조제8항 위반)
10만원	•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법 제9조 제6항 위반)



## 안전점검 및 수칙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제거 및 수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는 실내·외 안전수칙을 익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실내·외 환경의 정기 점검, 보육교직원의 실내·외 활동(자유선택놀이, 놀이기구 이용 등) 시 유의사항 및 지도방법, 영유아가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 안전점검
2. 보육교직원 안전수칙
3. 영유아 안전수칙



01

## 안전점검



### 정기 점검(매일, 매월)

-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환경의 안전에 대하여 매일, 매월 점검한다.
- 점검 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합안전점검표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서식 4] 참고, p.104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 실내·외 환경, 놀잇감 및 놀이기구, 현관, 통로, 계단, 화장실, 조리실 및 식당

####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거,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 받아야 한다. 단, 연면적 3,000㎡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의 정기점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안내(한국시설안전공단, 055-771-4818)

## 수시 점검

- 지자체 지도점검, 평가인증,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력 등 기관의 도움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관련 법규·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 보육사업안내: 놀이터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2)건축물 유지관리



## 02

## 보육교직원 안전수칙



### 실내·외 공간 유의사항 및 지도방법

#### ■ 현관 및 출입구

-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개폐관리 습관을 들인다(영유아 이탈 막음, 외부인 출입 통제).
- 외부인이 방문할 때마다 벨 또는 인터폰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시킨다.
- 영유아가 들어가고 나갈 경우 반드시 성인이 동반하고, 현관문에 영유아의 몸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항상 주시한다(특히 자동문).
- 현관 주변에 위험요소(핀, 돌멩이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즉시 치운다.
- 눈·비오는 날,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 수시로 제거한다.

#### ■ 복도 및 계단

- 우측통행하도록 지도한다.
-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영유아의 행동을 주시하며 걸어간다.
-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 영유아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한다.

#### ■ 문 및 창문

- 창문 아래쪽에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구나 비품 등을 두지 않는다.
- 영유아가 사용하는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문닫힘방지대 사용을 습관화 한다.

#### ■ 놀잇감

- 바닥에 걸려 넘어지거나 뺏아 다칠만한 놀잇감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만0세~1세 영아에게 직경 3.5cm 미만 놀잇감(구슬, 작은 레고 블록, 단추, 공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 바닥 및 벽

- 영아가 삼킬만한 이물질, 영유아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전선, 줄 등), 발을 다치게 하는 물건(유리조각, 바늘, 철사, 파편 등)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 즉시 제거한다.
- 벽에 떨어질 염려가 있는 액자 등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 벽에 압핀이나 압정 대신 나무집게, 파일바인더 등을 사용한다.

#### ■ 보육실 및 가구(책상, 의자, 교구장, 사물함 등)

- 영유아만 두고 보육실을 비우지 않는다.
- 영유아를 돌보며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다.
- 영유아가 사용하는 가구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가구에 모서리보호대, 안전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위험한 물건의 보관에 유의한다.

#### ■ 전선 및 콘센트

- 모든 전선은 짧게 정리하여 사용한다.
-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꼽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덮어 둔다.
- 사용하지 않을 시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 ■ 기타 비품(약품, 피아노, 쓰레기통 등)

- 가지고 온 약품은 영유아 수납장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냉장, 상온 구분) 한다.
- 영유아가 피아노 뚜껑을 직접 열고 닫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사용하고 다 쓴 물건 중 위험한 물건(목공용 본드, 못 등)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보육교직원이 별도로 모아서 버린다.

#### ■ 유희실

-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보육교직원이 더 주의하여 살핀다.
- 놀이 종료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한다.
- 바닥에 있는 놀잇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본다.

### ▣ 화장실

- 화장실 사용 전에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놀이 도중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는 유아의 경우 가기 전에 반드시 보육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다녀온 후에는 잘 다녀왔는지, 손은 잘 씻었는지, 옷은 바르게 입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 배변처리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로 보육교직원을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 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에서 갈아준다.
- 기저귀 가는 공간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

### ▣ 조리실

- 영유아를 데리고(업거나 안는 등) 조리실로 들어가지 않는다.
- 영유아가 물을 먹기 위해 조리실을 드나드는 등 조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뜨거운 음식은 조리실에서 미리 식혀서 배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 어린이집 주변

- 깨진 물건, 병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제거한다.
- 돌아다니는 동물(개, 고양이 등)이 어린이집 주변에 있을 경우 영유아가 함부로 만지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신고한다.

### ▣ 실외 놀이터

- 실외놀이 전에 비상약품을 챙기고, 영유아의 옷차림(모자끈, 운동화끈, 머리끈 등)을 살핀다.
- 실외놀이 활동 전에 차량, 골목길, 교통안전 등의 유의사항,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시로 인원 점검한다.
-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바로 중지시킨다.
-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보육교직원이 더 주의하여 살핀다.
- 놀이가 있는 놀이기구에서 노는 영유아는 더 주의하여 살핀다.
- 위험한 곳에 올라간 영유아의 경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실외놀이 종료 시간을 사전에 알려준다.
-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유리 파편, 돌 등 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 자유선택놀이 시 유의사항 및 지도방법

### ▣ 쌍기영역

- 무거운 블록은 아래에 배치한다.
- 영아반의 경우 너무 무거운 블록은 제공하지 않는다(던지거나 깨지는 사고 방지).
- 블록은 영유아가 쉽게 꺼내고 정리할 수 있는 높이의 정리함에 보관한다.
- 블록은 끝이 날카롭지 않고 조립하기 쉬운 것으로 선택한다.
- 블록을 가지고 총, 칼 등을 만들어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깨진 블록을 보면 바로 치운다.

### ▣ 역할영역

- 전화기, 드라이어 등의 놀잇감은 줄의 길이가 50cm가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하거나 줄이 긴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사용한다.
-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놀잇감은 주지 않는다(화장품 거울 부분에는 시트지를 붙여 사용 가능).
- 성인용 화장품(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제공할 경우 깨끗이 세척하여 내용물이 없도록 한다.
- 영아반에는 젓가락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역할영역에 두지 않는다.

### ▣ 언어영역

- 카세트 또는 CD 플레이어를 사용할 때 음향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사용하고, 영유아가 음향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 헤드폰이나 이어폰 전선줄은 보이지 않게 처리하거나 짧게 정리한다.

### ▣ 미술영역

- 미술재료는 피부에 닿아도 해롭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 색소가 유해한 색종이나 유점토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재활용품, 자연물 등을 사용할 때는 깨끗하게 씻어 안전하게 처리한 후 사용한다.
- 가위는 끝이 무디며 가볍고 안전한 것(유아용)으로 보육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한다.

 보육교직원의 지도가 필요한 미술 도구(스테이플러, 편치, 목공용 본드,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하세요



평소

사용하기 전

사용 시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주의사항,  
안전 약속 등 이야기를 나누세요

보육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하도록 하세요

## 놀이기구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지도방법

### ▶ 그네

- 그네줄이 단단히 매어 있는지, 좌석의 훠손 정도를 확인한다.
- 그네를 타고 있는 영유아는 놀이하고 있는 친구와 충돌하지 않는지 주의해서 살핀다.
- 양손으로 그네줄을 잡고 앉아서 타고,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리도록 지도한다.
-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거나 친구와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그네 가까이에서 놀이하지 않도록 한다.

### ▶ 시소

- 쇠로 된 시소를 이용하기 전에 시소 표면 온도를 확인하고, 화상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녹이 슬지 않았는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시소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수시로 살핀다.
- 시소에 오르고 내릴 때 손잡이를 반드시 잡도록 지도한다.

### ▶ 미끄럼틀

- 미끄럼틀을 이용하기 전에 보육교직원은 반드시 미끄럼틀의 표면 온도를 확인하고, 화상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 나무로 된 미끄럼틀의 경우에는 나무가 일어난 곳, 갈라진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미끄럼틀 이용 시 미끄럼틀판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 먼저 내려간 영유아와 부딪치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내려가도록 지도한다.

### ▶ 음률영역

-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할 경우 영유아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
- 피아노를 사용할 때는 영유아의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아노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피아노 뚜껑을 닫고 안전잠금장치를 한다.
- 카세트 및 CD 플레이어를 사용할 때 음향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사용하고, 영유아가 음향을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악기를 바르게 익혀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악기로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악기를 사용한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오르기 기구<sup>8)</sup>

- 끈이 끊어져 밭이 빠지는 곳은 없는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영유아가 올라갈 때 흔들거림이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혼자의 힘으로 기구를 잡을 수 없는 영유아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 모래놀이

- 모래놀이 시설은 세균번식(곰팡이 등)을 막기 위하여 햇볕이 잘 들어오고 양지 바른 곳에 설치한다. 햇볕이 강하고 더운 날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래놀이 도구 정리함을 만들어 주어 영유아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깨진 모래놀이 도구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한다.
- 모래를 입에 넣거나 다른 사람에게 뿌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 모래는 수시로 체로 쳐서 유리조각이나 돌멩이 등의 위험물질을 골라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이나 덮개로 덮어두는 것이 좋다.
- 모래가 부족해지면 수시로 보충해 주고,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한다.



놀이기구 및 모래 소독

### ▣ 모형 자동차 및 자전거

- 자전거와 같이 바퀴 달린 탈 것은 바퀴의 상태와 연결 부위를 확인한다.
- 이탈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다른 영유아들과 부딪치지 않는지 더 주의하여 살핀다.

8) 오르기 기구란 정글짐, 그물망 오르기, 계단 오르기, 사다리 오르기 등을 말한다.

03

## 영유아 안전수칙



### 실내·외 이용 시 지켜야 할 약속

#### ▣ 현관 및 출입구

-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심해요.
-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 차례를 기다려 신발을 신고 벗어요.

#### ▣ 복도 및 계단

- 우측통행을 해요.
- 앞 친구와 간격을 유지해요.
- 친구에게 빨리 걷도록 재촉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요.
- 뛰거나 장난치지 않고 바르게 걸어요.
- 계단에서는 한 칸씩 계단을 오르고 내려요.

#### ▣ 승강기

- 승강기를 탈 때는 선생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요.
- 승강기 버튼이나 스위치를 장난으로 누르면 안 돼요.
- 불이 났을 때 승강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요.
- 승강기 안에서 “쿵! 쿵!” 뛰지 않아요.
- 승강기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요.
- 승강기 문에 기대지 않아요.
- 승강기에 갇히면 보육교직원이나 보호자는 비상버튼을 누르고 승강기번호를 확인 후 인터폰,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요.
- 승강기에 갇히면 비상버튼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를 기다려요.



### 문 및 창문

- 문에 매달리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 문은 조심조심 살살 닫아요.
- 친구가 문을 열 때 방해하지 않아요.
- 커튼이나 블라인드 뒤에서 장난치면 위험해요.
- 문틈 사이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요.

### 책상 및 의자

- 올라가거나 세게 흔들지 않아요.
-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앉아요.
- 의자를 끄덕거리면 넘어질 수 있어요.
- 의자를 옮길 때는 두 손으로 들어 옮겨요.

### 놀잇감

- 놀잇감은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아요.
- 친구가 먼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싶으면 친구에게 “빌려줄래?”라고 물어봐요.
- 친구가 놀잇감을 빌려주면 “고마워”라고 말해요.
- 놀잇감을 바르게 가지고 놀아요.
- 놀이가 끝난 후 제자리에 정리해요.

### 전선 및 콘센트

- 전선, 콘센트를 만지거나 잡아당기면 위험해요.
- 젓가락, 쇠막대 등을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에 감전되어 위험할 수 있어요.

### 유희실

- 친구를 밀거나 빠르게 달리지 않아요.
- 차례를 지키며 놀이기구를 사용해요.

### 화장실 및 조리실

- 물을 뿌리는 등 장난치지 않아요.
-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 옆 친구에게 물이 튀지 않게 손을 씻어요.
- 화장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똑똑똑’ 두드려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요.
- 놀이 도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가기 전과 다녀온 후 반드시 선생님께 알려요.
- 우리는 교사용 화장실, 세탁실, 조리실에 출입할 수 없어요.

### 어린이집 주변

- 동물, 식물 등은 위험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 물어보고 만져요.
- 이동할 때 혼자 멀리가지 않고 선생님을 보며 따라가요.

### 실외 놀이터

- 선생님과 친구 가까이에서 놀이해요.
-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 흙이나 모래, 돌, 놀잇감을 던지지 않아요.

## 자유선택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

- 뛰지 않고 걸어요.
- 고장 나거나 깨진 놀잇감은 선생님께 말해요.
- 서로 양보하거나 차례를 기다려 놀이해요.
-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보관해요.
- 작은 물건(구슬 등)은 입, 코, 귀에 넣지 않아요.
-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소리지르지 않고 적당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 놀잇감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던지고 놀잇감을 발로 밟지 않아요.
- 모형 음식과 그릇은 입에 넣지 않고, 먹는 흉내만 내요.
- 구슬 끼기 끈을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목에 감지 않아요.
- 책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던지지 않아요.

## 놀이기구 이용 시 지켜야 할 약속

### ▶ 놀이기구 공통

-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는 차례를 지켜서 이용해요.
- 물건이나 가방을 내려놓고 놀이기구를 이용해요.



### ▶ 그네

- 완전히 정지한 후에 그네에 타고 내려요.
- 한가운데에 앉아서 타요.
- 한 그네에 한 사람만 타요.
- 친구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그 앞이나 뒤로 지나가지 않아요.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아요.
- 줄을 꼭 잡고 타고, 타는 도중에 뛰어내리지 않아요.
- 그넷줄을 꼬아서 타면 줄에 손이 끼어 다칠 수 있어요.

### ▶ 시소

- 함께 타는 친구와 마주보고 타요.
-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요.
- 시소를 탄 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뛰지 않아요.
- 내릴 때는 같이 탄 친구에게 미리 알리고 조심히 내려요.
-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아요.

### ▶ 미끄럼틀

-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요.
-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가요.
-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아요.
-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요.
-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가요.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고, 바른자세로 타고 내려요.
-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도 부딪치지 않게 빨리 비켜줘요.

### ▶ 오르기 기구

- 가로대를 양손으로 잡고 올라가요.
-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오는 방향을 알아요.
- 기구 위에 있는 친구의 발을 잡거나 흔들지 않아요.
- 내려올 때는 아래를 잘 살피면서 내려와요.

### ▶ 회전놀이 기구

-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지 않아요.
- 회전 중에 친구와 장난(밀기)하지 않아요.
- 천천히 회전해요.
- 회전 중에는 갑자기 멈추게 하기 위해 회전대를 붙잡지 않아요.
- 회전대를 발로 돌리거나 밑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 ▶ 흔들다리

- 받침대를 건널 때 한 칸씩 건너요.
- 흔들다리 위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요.
- 손잡이와 받침대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 참고 자료

본문에 수록된 각종 서식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별첨 1 ~ 별첨 2]는 본문 내용을 보충해주는 자료이며,  
[서식 1 ~ 서식 9]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보육사업  
안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별첨 1] 신체에 해를 끼치는 식물

[별첨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대한 내용 및 점검주기

[서식 1]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서식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대장

[서식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서식 4]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서식 5]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서식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요청서

[서식 7]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 8] 부모동의 및 조사서

[서식 9]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서

[찾아보기]



### 별첨1 신체에 해를 끼치는 식물



옷나무

약간의 독성이 있어 사람에 따라 스치기만 해도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습진을 악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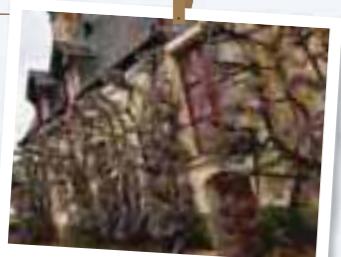
담쟁이덩굴

잎의 가장자리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큰 톱니가 불규칙하게 있다. 만졌을 경우 상처를 입는다.



철쭉

독성이 강해서 벌이 오지 않을 정도이다. 먹었을 경우 입안이 따끔거리고 침분비 증가, 구토, 설사, 두통,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시력이 흐릿해진다.



등나무

전체가 독성이 있고, 메스꺼움, 구토, 경련, 설사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장미

줄기에 가시가 있어 만졌을 경우 찔려 상처를 입는다.



아주까리

잎과 씨에 독성이 있다. 잎을 소량 섭취했을 시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씨앗은 독극물과 같은 독성이 있어 위험하다.



금낭화

잎, 뿌리에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되나, 어린순을 따서 삶은 다음 며칠 동안 물에 담궈 독성을 우려낸 후 먹을 수 있다.



디기탈리스

디카토신 성분이 있어서 먹을 경우 급성중독증상, 시력착란, 중추신경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까지 할 수 있다.



디펜바카야

옥살산칼슘이라는 독이 있어서 잎을 먹을 경우 혀가 마비되고, 입과 목이 붓고, 말을 못하고 기도를 막아 질식사할 위험이 있다.



란타나

잎은 피부염증을 일으키고, 열매는 구토, 설사, 순환기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열매를 먹을 경우 호흡기장애, 사망까지 할 수 있다.



만데빌라

수액에는 독성이 있어서 만지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엔젤트럼펫

전체에 독성이 있으며 특히 씨와 잎에 많이 들어있다. 만지지 않아야 하고, 향기를 맡으면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예루살렘 체리

열매를 먹으면 단맛이 나지만 성인도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차스민

독성이 있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열매를 먹었을 경우 치명적이다.



은방울꽃

독성이 있어서 먹을 경우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맥박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정신착란을 동반한다.



잉글리쉬 아이비

스치는 것만으로도 알러지를 일으키고, 먹을 경우 호흡곤란, 혼수상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



독성이 있어 먹을 경우, 가려움, 구토, 몸이 허약해지고 땀이 난다.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경련, 혈액순환장애를 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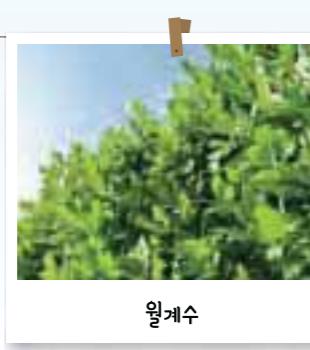
크로튼

줄기로부터 배출되는 우유빛 수액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피부염증을 유발한다.



히아신스 수선화

독성이 있어 먹을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유발한다.



월계수

치명적인 독이 있다. 먹을 경우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하고, 무력감, 호흡곤란, 혼수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협죽도

나무껍질, 뿌리, 씨앗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먹을 경우 설사, 구토, 현기증, 복통, 식은땀 등 증상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 별첨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대한 내용 및 점검주기

구분	내용	점검주기	
		권고	의무
부대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매일	월간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동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훑어짐	1주	월간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벗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놀이터내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유실모래의 보충	2주	월간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상태	매일	월간
	기둥의 고정 및 조임장치의 조임상태	매일	월간
	기구 및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2주	월간
그네	그네고리('s' 흙)의 풀림 및 파손	매일	월간
	그네 좌석판의 파손	매일	월간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매일	월간
	그넷줄의 꼬임	매일	월간
	그네 체인 모양 변형	1주	월간
	그넷줄의 균형상태	매일	월간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매일	월간
	신체부위가 길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금속재질의 녹 상태 발생	1주	월간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볼트나 나사 풀림형태	1주	월간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1주	월간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1주	월간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1주	월간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매일	월간
	신체부위가 길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녹슨 부분은 없는가	매일	월간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2주	월간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1주	월간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매일	월간

구분	내용	점검주기	
		권고	의무
흔들놀이기구	시소의 무게균형의 정확성(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매일	월간
	충격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1주	월간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1주	월간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1주	월간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신체부위가(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금속부분의 녹슬,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가구의 금이 간 곳	매일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2주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매일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회전놀이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2주	월간
	손잡이의 파손	매일	월간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1주	월간
	회전축의 강도	1주	월간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신체부위가(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회전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슬,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2주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파이프가 휘어짐	1주	월간
정글짐,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일	월간
	금속부분의 녹슬	1주	월간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2주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그물망(체인, 타이어)의 사이의 연결부위 고정성	매일	월간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매일	월간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매일	월간
	하강지역의 모래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일	월간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금속부분의 녹슬,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2주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 서식 1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5. 15.>

### [ ] 설치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 정기시설검사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검사 신청 내용				
(시설번호)어린이놀이시설명	놀이기구 설치현황	설치장소	설치면적(m <sup>2</sup> )	검사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명 또는 인)

####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사 결과			
판정	[ ] 합격      [ ] 불합격		
	항 목	기준치	결과치
불합격사유			
비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 )검사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안전검사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 (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	---	--

유의사항		
검사기관은 처리기간(30일)까지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최종하는 일자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까지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안전검사	→	판정	→	통보
신청인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서식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대장

안전점검실시대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서식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5. 15.>

###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전 단신 청 내 용

시설번호	어린이 놀이시설명	장 소	설치연월	진단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49

신설인

(서명 또는 약어)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진단결과

관	정	
조치필요사항		
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안전진단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직인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	----	---

## 서식 4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 일별 점검표

#### ① 급식 분야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위생관리 및 식재료 관리	-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하고, 배식시에는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하고 있다.							
	-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있다.							
	-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용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고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 소독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							
작업 관리	-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하고 있다.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쇠고기 등 16종)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그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을 하고 있다.							
시설 설비관리	- 조리장 바닥과 배수로에 물고임 및 냄새역류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 후드, 환풍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 \*\*가 표시된 점검사항은 집단급식소 미신고 대상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할 사항은 아님

#### ② 안전 분야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 사항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실외 환경	- 어린이집 보호벽 및 주변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실외놀이 공간 주변의 돌, 유리조각, 요철, 녹이 슨 부분, 벗겨진 페인트, 돌출된 모서리가 방치되어 있는가?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웅덩이가 있는가?							
실내 환경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은 없는가?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있는가?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대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대 등을 사용하기에 양호한가?							
	- 보육용품이나 비품 유리창 등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있는가?							
놀잇감 및 놀이 기구	- 망가져 날카롭고 위험한 것 또는 부품이 빠지거나 작은 볼트 등이 빠진 것은 없는가?							
	- 유해 색소가 칠해진 놀잇감은 없는가?							
	- 영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 놀잇감 및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화장실·세면대	- 화장실내 세제나 락스 등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전기·화기·위험물	-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가스밸브와 가스중간밸브 잠금은 양호한가?							

## ③ 차량 분야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운행 전 점검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이 비치여부 및 비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차량시동 후 엔진 및 각종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하고 전·후방 사각지대에 영유아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행 중 점검	- 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육교사 등)이 탑승하는가?							
	-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영유아가 있는가?							
	-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 후 점검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가?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 차량 내 영유아가 전원 하차 하였는지 확인한다.							

## 월별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월	월	
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 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실외환경	- 어린이집 주변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 위험한 적치물, 죽대 봉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실내 환경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현관·통로·계단·비상구	- 출입문, 현관문 등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계단, 통로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있는가?			
	-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화장실·세면대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실내외놀이 기구 및 공간	- 모든 놀이기구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놀이 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영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 인가?			
	- 기초대, 지지대 등 매설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 모든 놀이기구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의 충격흡수재 성능은 양호한가?			
	- 보수가 필요한 놀잇감 및 놀이 기구가 방치되어 있는가?			
	- 놀이기구의 높이가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안전검사(KC 인증 등)를 필한 제품인가?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월	
전기·가스· 위험물 안전관리	- 전선, 콘센트, 플러그 등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한 개의 콘센트에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손된 것은 없는가?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소방시설 관리	- 대피를 위한 대피도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 소화기, 스프링쿨러 등 소화장비의 작동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이 양호한가?		
비상대피 시설관리	-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시 참고사항

#### 안전분야 일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 1) 실외환경

- 어린이집 보호벽 및 어린이집 주변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담, 울타리, 창살, 가스 혹은 난방기 등의 계량기,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 비상미끄럼틀, 외부 차양 등 설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즉시 안전하게 제거·수리 및 관리한다.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가 없는가?

(조치사항) 오물 및 물 웅덩이는 전염성 질환을 야기 시키는 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제거하고, 물 웅덩이는 물 제거 후 웅덩이를 관리하여 영유아가 넘어질 수 있음을 방지한다.

##### 2) 실내환경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문과 창문의 안전상태 확인 및 창문 등의 가까이에 오를 수 있는 물품이 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한다.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조치사항) 화장실, 계단, 실내 보육실 등에 미끄러운 곳, 물이 고인 곳을 확인한다. 미끄럼방지 시트 또는 타일을 부착하거나 물기가 많으면 물기를 제거한다. 또한, 바닥의 단차가 있는 경우 영유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바닥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대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대 등을 사용하기에 양호한가?

(조치사항) 유사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방치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한다.

##### 3) 놀잇감 및 놀이기구

- 영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조치사항) 놀잇감의 크기가 영유아의 입, 코, 귀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3.5cm 이상의 놀잇감을 준비한다.

#### - 놀잇감 및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놀잇감이 영유아가 수납하기에 적당한지, 무거운 놀잇감이 높은 곳에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유아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수납위치를 바꾸고, 무겁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놀잇감은 즉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다. 방치된 놀잇감은 영유아들이 올라가 추락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 4) 전기·화기·위험물

#####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라디에이터, 난로, 히터 등의 보호덮개, 라이터, 성냥, 양초, 폭죽 등이 방치된 것이 있는지, 가스 중간밸브 잡김, 화기시설 주변의 가연물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품은 즉시 제거한다. 보호덮개가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화학용품 및 약품, 살충제, 세제, 기타 위험한 약품 등이 방치되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특히 약품의 경우 보육실 영유아용 책상위에 놓여져 영유아들이 만지거나 먹을 수 있기에 주의를 더 요한다.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 한다.  
※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4조

##### - 가스밸브와 가스중간밸브 잡금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가스와 가스중간밸브 잡금 상태, 가스누설 탐지기의 상태·위치 등을 확인하여 가스누출을 예방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는 중간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가스밸브 주위의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가스누설탐지기의 위치(LNG: 천장에서 30cm, LPG: 바닥에서 30cm 이내)를 점검하고 손상여부, 전원이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상이 있을시 전문업체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정기검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연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점검을 받는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 외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

#### 월별점검체크리스트 참고사항

#### 1) 안전관리

##### -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조치사항) 원장의 안전관리 책임성,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원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 전문성(방화관리자 자격 등) 확보 하도록 하고, 교사가 안전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수립되도록 한다.

#### -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조치사항) 비상시 소방서·병원·경찰소 등의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전화기 옆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속적으로 소방서, 병원의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의 전화번호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한다.

#### 2) 실외 환경

##### - 어린이집 주변에 감전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어린이집 50m 이내에 고압선, 전선, 가로등 등 감전위험을 확인한다. 확인물 발견 시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 - 위험한 적치물, 축대·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어린이집 주변 50m 이내에 위험한 물건·물품(방치된 자동차 생활쓰레기 적치,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 맨홀, 파인 곳, 공사장 등)이 확인 되면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센터 포함)에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 3) 실내환경

#####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건축설비의 전기, 난방, 조명, 급배수 등의 설비물의 고정 상태와 벽 천장 등에 고정된 물품과 장식물 등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수리필요시 전문업체 의뢰한다.

#####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조치사항) 창문의 깨짐, 창문 테두리의 실리콘 상태, 방충망의 노화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즉시 조치한다.

#### 4) 현관·통로·계단·비상구

##### - 출입문, 현관문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조치사항) 보안을 위한 잠김 문이나 인터폰·초인종이 정상작동여부 확인 후 응급조치와 필요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또한, 출입문과 현관문의 손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고무 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한다.

##### -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안전손잡이, 적치물, 난간의 간격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응급조치 후 필요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 계단의 단 높이는 16cm이하이며 단의 높이가 일정하여야 하며, 단 너비는 26cm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난간의 높이는 110cm이상, 난간살의 간격은 10cm이하로 설치한다

(출처: 안전매뉴얼연구. 중앙보육정보센터 2008).

## 5) 화장실·세면대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조치사항) 방수용 콘센트 및 물에 의한 전기 위험 여부를 확인한다. 콘센트는 방수용으로 교체하고, 물에 젖거나 고인 물(욕조 등)에 추락이 가능한 물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또는 제거한다.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조치사항) 고정상태 확인 시 나사 풀림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 6) 실내외 놀이기구와 공간

- 모든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놀이기구의 고정상태, 매설된 지지대의 노출, 윤활유 보충 등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 후 필요시 관리업체에 의뢰한다.

- 놀이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영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인가?

(조치사항) 집합놀이기구 등의 틈새나 간격의 너비 확인 및 노후로 인한 영유아 신체의 빠짐 및 끼임 등을 확인 한다(손가락: 8mm이하·25mm이상, 발: 30mm이하, 머리: 9cm이하·23cm이상). 안전관리 필요시에는 1차 안전조치로 접근금지 표시 및 전문업체 수리 의뢰한다.

- 모든 놀이기구의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에 충격흡수제의 성능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 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5-30cm 이상의 모래, 우레탄 바닥, 매트 등). 충격흡수제 사용시 마모되어 구멍이 나거나 끝 부분이 말립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걸려 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안전조치 후 전문 업체에 의뢰한다.

- 놀이기구의 높이가 영유아에게 적합 한가?

(조치사항) 놀이기구의 구입 시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신체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참고로 놀이 기구의 높이는 2.5m 이하로 설치한다.

※ 출처: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소방방재청 2005

## 7)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

- 전선, 콘센트, 플러그 등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조치사항) 실내 전선의 노후, 괴복손상, 파손된 콘센트 및 플러그 등을 확인한다. 벗겨진 전선은 절연 테이프로 감싸고, 파손된 콘센트 플러그 등은 즉시 교체한다. 필요시 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의뢰한다.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손된 것은 없는가?

(조치사항) 노후하거나 파손된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는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교체하도록 한다. 또한,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시 전기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법: 전기사업법 제65조~제6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의4 등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LNG 또는 LPG에 따른 가스경보기의 위치·설치 상태·정상작동 여부 및 관련법에 의해 점검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필요시 가스경보기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동설치·수리·교체하도록 한다.

※ 관련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8) 소방시설 관리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의 관리 상태는 적합한가?

(조치사항) 소화기의 비치 위치, 압력 등의 적합한 관리상태 확인한다. 소화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1대 이상을 비치한다. 또한, 공간의 제약성 등을 확인 후 필요시 추가로 비치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띠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되 영유아 보행시 충돌 방지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놓는다, 소화기는 압력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방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옥외소화전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소화전 함의 내용물을 확인(관창 1, 호스 2), 방수시 수평거리 17m 도달 시 정상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거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 9) 비상대피시설관리

-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조치사항)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 평상시 영유가 개폐할 수 없는 상태, 유사시 용이한 개방 가능 등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조치사항) 유도등 유도표지의 위치, 유도등의 상태·점등 등을 확인한다.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설치기준에 적합성 및 위치·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업체에 수리·점검을 받도록 한다.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조치사항) 계단, 통로, 출입문 등 대피경로에 적치물 방치,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확보, 비상출구의 잠금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계단, 통로, 출입문 등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은 즉시 이동조치 한다. 계단·통로·출입구의 유효너비, 출입문의 개폐방향, 비상구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한다.

※ 관련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서식 5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 본 서식은 예시로서 어린이집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

### oo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oo어린이집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제15의1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및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 교사의 전문성 향상, 보육프로그램 향상,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TV는 어린이의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CCTV설치 운영책임관
  - 책임관: oo어린이집 원장
  - 운영(담당)자: oo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어린이집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 제6조(CCTV 설치)

- ① 어린이집 CCTV는 총 0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 1. 보육실 00대(0개의 보육실 각1대)
  - 2. 공용공간 0대(유희실 0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0대)
  - 3. 외부공간 0대(어린이놀이터 1대)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000 및 000에 설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oo어린이집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1. CCTV 운영모니터
  - 2. 디지털녹화기
  - 3. 그 밖의 부대장치

###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CCTV 성능: HD급(100만 화소)
  - 2. CCTV 촬영: 일과 중 촬영 또는 24시간 연속촬영(일과시간 외 동작감지 촬영)
  - 3. CCTV 정보보유기간: 00일
  - 4. CCTV 저장: 100만 화소 이상(1,280x720), 초당 10 프레임
  -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000에 있는 DVR
  - 6.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장소: 00실
  -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00일 경과시 자동삭제(또는 00일)

###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 제8조(CCTV 사용 제한)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 ①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④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 ⑥ 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 ① 책임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oo어린이집 운영담당 직원으로 제한한다.
- ③ 책임관은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장비관리)

- ① 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0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착

#### 제15조(사무의 위탁)

- ① 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 「개인정보보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 서식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원내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어린이집원장 귀하				

## 서식 7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일부열람 <input type="checkbox"/> 열람연기 <input type="checkbox"/> 열람제한 <input type="checkbox"/> 제공 등 기타)				
수신자: 주 소:				
요구내용				
열람 일시	20 년 월 일 (오후 ~ 오후 )	열람 장소	교사실	
통지내용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열람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이의제기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어린이집 원장</p>				

## 서식 8 부모동의 및 조사서

부모동의 및 조사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사업자登 등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내용에 동의여부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기본 정보)								
보호자	성명	(남/여)	반나이					
	주소	생년월일						
	성명	영유아와의 관계	연락처					
1.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								
구분	처리내용							
응급 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상황 발생 시 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li> <li>-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input type="checkbox"/> 기관차점 의료기관( )이나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차점 의료기관( )으로 수출해주십시오.</li> </ul>							
귀가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li> <li>-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li> <li>*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보육이동의 13세증정생 이상 현재 자녀에게 인계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여, 이해 인계후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동의함 <input type="checkbox"/>)</li> <li>- 동·하원방법 :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동행    <input type="checkbox"/> 차량(어린이집)</li> <li>- 차량이용시 등하원 시간 : 등원( 시 분), 하원( 시 분) (필요 시 기재)</li> <li>- 부모의 인계보호자 : (필요시 기재)</li> </ul>							
2.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여부 : 참여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참여함(해당경우에만 아래 서식 작성) <input type="checkbox"/></li> </ul>								
특별활동프로그램								
명칭	내용	실시 횟수 (주·월)	요일	운영시간				
		회		~				
		회		~				
		회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을								
3. 식품알레르기 조사								
어린이집 금·간식 제공 시 식품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영유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해당식품과 대체가능 식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식품알레르기 여부</th> <th>알레르기 유발 식품</th> <th>알레르기 증상</th> <th>대체가능 식품</th> </tr> </thead> </table>					식품알레르기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레르기 증상	대체가능 식품
식품알레르기 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레르기 증상	대체가능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기는 대표적인 식품(제): 난류, 우유, 에밀, 흰콩, 대추, 밀, 고등어, 계, 새우, 페퍼민트,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등.</li> <li>*현재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없으나 이후 증상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관련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li> </ul>								

4. 개인정보 활용											
<p>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 3자 제공'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p> <table border="1"> <tr> <td>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td> <td>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td> </tr> <tr> <td>영유아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강검진정보, 사진 등</td> <td>영유아보육활동, 간접관리, 기정과의 연계 긴급한 상황 시 대처</td> </tr> </table>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영유아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강검진정보, 사진 등	영유아보육활동, 간접관리, 기정과의 연계 긴급한 상황 시 대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영유아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강검진정보, 사진 등	영유아보육활동, 간접관리, 기정과의 연계 긴급한 상황 시 대처										
<p>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p> <table border="1"> <tr> <td>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td> <td>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td> <td>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td> <td>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td> </tr> <tr> <td>CCTV 영상 확인 요청자</td> <td>CCTV 영상</td> <td>이동의 시고 시 발생 상황 파악</td> <td>영상을 확인하는 기간 (보조마개로 인해 영상을 보관할 경우 영상 저장 시, 보유기간을 정함)</td> </tr> </table>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CCTV 영상 확인 요청자	CCTV 영상	이동의 시고 시 발생 상황 파악	영상을 확인하는 기간 (보조마개로 인해 영상을 보관할 경우 영상 저장 시, 보유기간을 정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CCTV 영상 확인 요청자	CCTV 영상	이동의 시고 시 발생 상황 파악	영상을 확인하는 기간 (보조마개로 인해 영상을 보관할 경우 영상 저장 시, 보유기간을 정함)								
<p>5. 어린이집 운영내용 확인 및 협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 및 재원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운영안내서를 통해 안내해드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모님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li> <li>아래의 내용은 우리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00어린이집 모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li> <li>어린이집의 개방원칙 및 인개규정</li> <li>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li> <li>아프거나 다른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한아치리자침,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등)</li> <li>부모동의 및 조사서 작성 안내(귀가동의, 응급처치동의, 식품알레르기 관련, 개인정보 활용 등)</li> <li>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안내</li> <li>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 갖는 책임한계에 관한 규정</li> <li>맞춤형프로그램 운영(맞춤형 운영기준 포함)</li> <li>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이동학대 예방지침 포함)</li> </ol> <p>* 위 사항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리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00어린이집(0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영유아명 : _____ 보호자(서명): _____</p>											

## 서식9.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서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선임 [ ] 변경 통보서

\* 해당이 어두운 날(■■■)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	------	----

통보인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 ] 피난용 엘리베이터, [ ] 기타) 소재지	

승강기 안전 관리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존 전화번호	해임 또는 교체일
	선임 전화번호	선임 또는 변경일
	변경 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받은 경우만 기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별표 8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인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로 없음
------	--	--------

#### 유의사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공란으로 둔 채 "선임·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변경"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통보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지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권덕수, 김애란, 김지영, 우민정, 한진원(2018). 아동안전관리. 정민사.
- 김영실, 윤진주, 김정주(2013). 영유아 안전관리. 공동체.
- 김일옥, 이정은, 박현정(2018). 아동안전관리. 양서원.
-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9). 2019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 성미영, 민미희, 정현심(2013). 아동안전관리. 학지사.
- 소방방재청(2006). 어린이시설 안전점검매뉴얼.
- 승강기안전공단(2018). 안전한 승강기 관리요령.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1). 보육시설 안전환경관리 가이드북.
- 엄세진, 이해정, 윤정진(2018). 아동안전관리. 공동체.
- 육아정책연구소(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 실태 및 보호 대책.
- 이영환, 고선옥, 김경신, 김정희, 이수재(2018). 아동안전관리. 창지사.
- 정정옥, 임미혜(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창지사.
- 천호림(2015).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안전교육. 매경출판(주).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http://www.cpf.go.kr>
- 행정안전부(20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10).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 세균, 곰팡이 등 실내 오염물질 농도 높게 나타나.



메모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두고  
기억하세요^^





## 찾아보기

가전제품 관리 41  
개폐 관리 9  
건물 외부 관리 62  
금연구역 77

놀이기구 46, 65  
놀이터 65  
놀잇감 관리 34  
놀잇감 세척 35

담장 및 울타리 62  
덤웨이터 22, 56  
동물 및 식물 관리 63

미끄럼방지대 16  
목욕실 51  
미디어안전 58

방염 28  
변기 50  
보험 가입 22, 75  
비품관리 39, 52, 55

세면대 49  
승강기 22  
신발장 17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70  
어린이집통합안전점검표 104  
안전교육 59, 74  
안전덮개 41, 43  
안전매트 16, 36, 46, 65  
인터폰 10

전선 42  
접지극 43  
정수기 21  
중간문 20

콘센트 42

피아노 41

화기시설 53  
흥미영역 30  
화장실바닥 49



## Part.1

### 실내·외 보육환경

- 발행인** 김영옥(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기획·편집** 김기석(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김심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국장)  
 김 훈(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예방사업팀 팀장)  
 송혜림(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예방사업팀)  
**자문 (가나다순)** 오경숙(면밀어린이집 원장)  
 우현경(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미정(여주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감수 (가나다순)** 김정열(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심정선(국회제3어린이집 원장)  
**협조 (가나다순)** 고양시립다움어린이집 / 고양시립대화소망어린이집  
 고양시립삼송어린이집 / 고양시립장미어린이집  
 구립동호어린이집 / 군포시립오금동어린이집  
 다정어린이집 / 두루미어린이집  
 사슴어린이집 / 시립문원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 중앙청사한빛어린이집  
 코레일오류동어린이집 / 필승어린이집  
 해담어린이집 / KB대전어린이집  
**디자인·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발행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행일** 제 3판 2019년 11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7층  
[www.csia.or.kr](http://www.csia.or.kr) TEL.1600-0611 FAX.1600-0617